

수원지방법원 2020. 4. 23 선고 2019나5793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4. 23 선고 2019나57930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9. 1. 30 선고 2018가단4235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A

피고,항소인 C

변론 종결 2020. 4. 2

판결 선고 2020. 4. 23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. 1. 30. 선고 2018가단4235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2, 3, 4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1항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 8, 073, 000원 및 2018. 11. 23.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286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당심에서, 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이자점유자인 피고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않았으므로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,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조합에 근저당권 을 설정해 주면서 피고의 동의도받지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하 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

살피건대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상의 이 사건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 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토지만을 낙찰받았을 뿐이고,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 고의 건물 철거및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.

그리고 갑제 1호증의 기재에의 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조합에 채권최고액 6, 8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 정해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, 달리 그 담보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었다거나

원고 가 이 사건건물을 이용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
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하현국판사 양시호판사 안현진

별지